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1515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
선내(가)부분 15m²를 인도하고,
나. 2024. 3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조영기

별지